

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

- 환경부 자료 제공 -

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(직접, 개별위탁, 공제조합)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.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했다.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화(안 제4조, 제5조)

1)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

2) 제품의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,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도록 함

나.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(안 제9조의2)

1)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·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2)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·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율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

다. 빈용기보증금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4)

1)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 등은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

라.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 이행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(안 제16조, 제18조)

1)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·포장재 중 폐기된 제품·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

2) 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,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회수의무를 명확히 함

마. 재활용부과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(안 제19조)

1)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, 사용목적, 과세자료의 내용 등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바.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운영관리시스템 구축(안 제21조)

1) EPR 제도 운영과 관련 재활용실적입력, 자료 분석, 투명한 실적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

사.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명확화,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등 조합 운영의 합리적 개선(안 제27조, 제28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3, 제29조의2)

1) 조합이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토록 명확히 하고, 재활용 경로가 유사한 포장재의 경우 통합형태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

2) 공제조합을 복수화하고 소규모 조합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요건 마련

3)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및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

아. 조합이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유사행위 금지(안 제28조의4)

1) 조합이 아닌 자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, 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 마련

2) 의무생산자는 조합이 아닌 자에게 직접 및 개별위탁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시키지 못하도록 함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
제2조제14호 중 “용기 등을”을 “용기(포장과 일체화되어 있는 포장부속물을 포함한다)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재활용의무생산자”란 생산·유통단계에서 재질·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·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양이 많은 제품·포장재를 제조, 수입,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, 수거체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억제하고”를 “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하며”로, “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”을 “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기술을 개발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, 재활용 가능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“포장재의 연차별”을 각각 “포장재의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자원순환형 포장 촉진) ① 제9조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·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경감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평가대상, 평가방법, 평가절차,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를 경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0조제1항”을 “제10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후단 중 “부과한다”를 “부과하되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”로 한다.

제2장제2절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사업자단체의 설립) ①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, 그 밖에 재사용 용기회수와 관련된 단체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도모하고 빈용기보증금의 적정 사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의 업무·조직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.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·포장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직접 재활용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제2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”을 “대통령령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재활용의무생산자”를 “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·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구축 또는 재질·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제품·포장재의 회수·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생산자”로, “주무부장관”을 “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(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”)을 (“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재활용의무생산자”를 “재활용의무생산자가(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제외한다)”로, 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”를 “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”를 “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”로, “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”을 “지는”으로, “환경부장관”을 “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재활용에”를 각각 “회수 및 재활용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인적 사항
2. 사용목적
3.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



납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⑥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.

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)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”을 “제23조 및 제25조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제16조에 따른”을 “다음 각호의”로, “제품·포장재별”을 “제16조에 따른 제품·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조·수입업자의 책무
2.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

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함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별, 포장재의 경우에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.

③ 조함은 법인으로 한다.

④ 조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⑤ 「민법」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함으로 본다.

제28조제1항제5호 중 “재활용의무”를 “회수 및 재활용의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조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

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조함의 인가취소) 환경부장관은 조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조함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
2. 조함의 설립목적 달성을 것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제28조의3(감독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, 회계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8조의4(유사명칭의 사용 및 유사행위 금지)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
2.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역할

② 의무생산자는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16조제1항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.

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, 납부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과 제18조를 준용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재활용지원금) ① 제28조에 따른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(이하 “재활용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의 시설 현황, 재활용제품의 품질, 재활용기술개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을 하는 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재활용사업자”로 한다.

제36조제3항 중 “제12호까지”를 “제11호까지”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제36조제1항”을 “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합의 역할을 한 자,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아닌 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도록 한 자, 제3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1호 중 “포장재의 연차별”을 “포장재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
포장과 법률

7의2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
11. 제18조(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제4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제4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7호의2, 제7호의3, 제8호 및 제9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☐

신·구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14. “포장재”란 제품의 수송, 보관, 취급,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·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.</p> <p>15. ~ 17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(이하 “제조자등”이라 한다)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,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_____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_____ _____ 용기(포장과 일체화되어 있는 포장부속물을 포함한다)를 _____.</p> <p>15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“재활용의무생산자”란 생산·유통단계에서 재질·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·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양이 많은 제품·포장재를 제조, 수입,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, 수거체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하며 _____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기술을 개발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(생 략) 〈신 설〉</p> <p>제9조(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들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 2. 합성수지재질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 〈신 설〉</p> <p>제10조의2(1회용 봉투·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)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·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 제12조(폐기물부담금) ①·② (생 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 〈신 설〉</p> <p>④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, 재활용 가능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포장재의 -----</p> <p>② ----- 포장 재의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2(자원순환형 포장 촉진) ① 제9조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·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경감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평가대상, 평가방법, 평가절차,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를 경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10조의2(1회용 봉투·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) 제10 조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폐기물부담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(加算金)을 부과한다.</p> <p>④~⑥ (생략) (신설)</p> <p>제16조(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) ① 생산·유통단계에서 재질·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·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·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(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. 이하 "재활용의무생산자"라 한다)는 그 제품·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.</p> <p>②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③ _____ _____ _____. _____ _____ 부과하되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.</p> <p>④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4(사업자단체의 설립) ①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, 그 밖에 재사용 용기회수와 관련된 단체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도모하고 빈용기보증금의 적정 사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협회의 업무·조직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.</p> <p>제16조(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·포장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직접 재활용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제2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_____ _____ 대 통 령 _____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재활용의무율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·포장재의 출고량,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(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),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·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(이하 "재활용의무율"이라 한다)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18조(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)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(이하 "재활용부과금"이라 한다)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, 그 납부시기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</p>	<p>제17조(재활용의무율) ① ————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·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구축 또는 재질·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제품·포장재의 회수·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생산자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—————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)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(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제외한다)————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—————. <단서 삭제></p> <p>② ————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————— 자는 ————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—————.</p> <p>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 ① —————</p> <p>회수 및 재활용에 —————.</p> <p>② ————— 회수 및 재활용에—————.</p> <p>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납세자의 인적 사항 2. 사용목적 3.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 <p>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</p>



현행	개정안
<p>따라 징수한다.</p> <p>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</p> <p>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 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26조(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) ①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7조(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)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·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	<p>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.</p> <p>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p> <p>⑥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</p> <p>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 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(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)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26조(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) ① _____ _____</p> <p>제23조 및 제25조 _____ _____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) ① _____ 다음 각호의 _____ 제16조에 따른 제품·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_____.</p> <p>1.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조·수입업자의 책무</p> <p>2.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별로, 포장재의 경우에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「민법」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28조(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)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〈신 설〉</p> <p>②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	<p>④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⑤ 「민법」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.</p> <p>제28조(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) ① _____ _____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회수 및 재활용의무_____</p> <p>6. 그 밖에 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의2(조합의 인가취소) 환경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조합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</p> <p>2.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/p> <p>제28조의3(감독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, 회계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의4(유사명칭의 사용 및 유사행위 금지)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p>1.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</p> <p>2.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역할</p> <p>② 의무생산자는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7조제1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29조(분담금 등) ①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, 납부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과 제18조를 준용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31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재활용사업자"라 한다)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(借款)을 앞선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</p> <p>제3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39조(벌칙)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,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16조제1항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.</p> <p>제29조(분담금 등)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, 납부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③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과 제18조를 준용한다.</p> <p>제29조의2(재활용지원금) ① 제28조에 따른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(이하 "재활용지원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의 시설현황, 재활용제품의 품질, 재활용기술개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31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) ① - -- 재 활 용 사 업 자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제11호까지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(벌칙)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합의 역할을 한 자,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아닌 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도록 한 자, 제36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,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</p> <p>2. ~ 7. (생략) 〈신설〉</p> <p>8. ~ 10. (생략) 〈신설〉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8조(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·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p> <p>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제4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7호의2, 제7호의3, 제8호 및 제9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제41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포장재의 ----- 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7의2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</p> 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제18조(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〈삭제〉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제4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7호의2, 제7호의3, 제8호 및 제9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부과·징수한다.</p>